

검 토 보 고 서

(2010.09.29)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1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 건 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년 8월 30일(월)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

2010년 9월 6일(월)

4. 개정근거

「지방자치법」(법률 제10344호, 2010. 6. 8 일부개정) 제136조,
제144조 등

5. 검토의견

0 본 조례안은 전문화된 영어독서 환경속에서 어린이들의 실질적인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마포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탁자 선정, 수강료 징수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0 본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마포영어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영어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관장은 영어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연회비 및 프로그램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자료의 대출 및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 수강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였음.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위탁 관련 분야의 경험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음.

0 마포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올바른 영어독서 습관 형성과 언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관내 어린이들의 영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 2008년11월1일

서강대학교와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수탁 운영관리 협약서’를 체결하고, 2009년1월29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는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0 본 조례안 중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은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이 없으므로 이를 “별지 서식”으로 하고, 안제9조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각각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수정의견

원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p> <p>제6조(회원가입) 영어도서 및 영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대출하려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하며,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u>별지 제1호 서식</u>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수강료 등 징수)</p> <p>① ~ ③ (생략)</p> <p>④ (생략)</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가족</p> <p>2. ~ 5. (생략)</p> <p>⑤ (생략)</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50%이내 차상위계층</p> <p>2. ~ 5. (생략)</p> <p>[<u>별지 1호 서식</u>] 회원가입신청서(제6조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00%; 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생 략)</div>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p> <p>제6조(회원가입) ----- ----- ----- ----- <u>별지 서식</u> ----- -----.</p> <p>제9조(수강료 등 징수)</p> <p>① ~ ③ (원안과 같음)</p> <p>④ (원안과 같음)</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p> <p>2. ~ 5. (원안과 같음)</p> <p>⑤ (원안과 같음)</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p> <p>2. ~ 5. (생략)</p> <p>[<u>별지 서식</u>] 회원가입신청서(제6조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00%; 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원안과 같음)</div>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법률 제10344호, 2010. 6. 8, 일부개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